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 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신질환자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217호, 2020. 4. 7. 공포, 2022. 4. 8. 시행)됨에 따라,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등급별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26. ~ 3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제2호 중 “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”을 “사회복지학·사회사업학 또는 작업치료학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다음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정신건강작업치료사
1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,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(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

2.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(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)이 있는 사람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

(1급 자격취득을 위한  
기간을 포함한다) 이상  
수련을 마친 사람

별표 2 제1호자목 중 “제1호부터 제8호까지”를 “가목부터 아목까지”로  
하고, 같은 표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정신건강작업치료사

- 1)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,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  
· 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
- 2)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  
비스 기획·수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: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

가. 정신건강증진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시설등”이라 한다)에서 5년 이상 근무(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: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

가.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
다.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·간호학·<u>사회복지학</u> 또는 <u>사회사업학</u>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36조(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<u>사회복지학·사회사업학</u> 또는 <u>작업치료학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861